

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
번호

90

제출년월일 : 1996. 2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□ 개정사유

'95. 1. 1.부터 청주시에 구가 설치되어 관할구역이 정해짐에 따라 공동실습소 설치학교의 위치를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의 청주농업고등학교 위치란중 "청주시"를 "청주시 상당구"로 하고, 충청북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의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위치란중 "청주시"를 "청주시 상당구"로, 충북공업고등학교 위치란중 "청주시"를 "청주시 흥덕구"로 변경함 (안 제2조관련 별표).

□ 개정근거

- 청주시구설치에관한조례 (청주시 조례 제1,795호, 1994. 12. 30.).

□ 조 례 안 : 덧붙임

□ 참고사항 : 덧붙임

- 신·구조문 대비표
- 관계법령 발췌서
- 충청북도의회 부의안건 공고문 사본
-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·의결 공문서 사본

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【별표】 청주농업고등학교의 위치란중 "청주시"를 "청주시 상당구"로,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의 위치란중 "청주시"를 "청주시 상당구"로, 충북공업고등학교의 위치란중 "청주시"를 "청주시 흥덕구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